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63호 2014. 10. 15.(수)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564호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 ----- 2
- 사천시 규칙 제565호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4-14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 17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363호(2)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6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등의 필요에 따라”를 “등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한하거나 또는”을 “제한하거나”로 한다.

제11조 중 “차량을 필요로 하는”을 “차량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 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을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교체기준을 충족하여 운행한”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을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조제2항 중 “필요한”을 “필요할”으로 각각 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3호(3)

③ 누구든지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2항과 제3항 중 “제반” 을 “모든” 으로 각각 한다.

제34조 중 “운전원에 대하여” 를 “운전원에게” 로 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를 “실시할 수 있다” 로 한다.

제35조 중 “운전원에 대한” 을 “운전원의”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3호(4)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교체기준(제4조 관련)

용도	규 모	배정대상	차량교체기준
승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시 본청 ·시 의회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	·시 본청 ·시 의회
승용 (업무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시 본청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	·시 본청 ·시 의회	
	소형승용차 (배기량 1,600cc미만)	·단위부서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미만)	·단위부서	
	다목적형승용차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 36인 이상)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경과
	중형승합차(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소형승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단위부서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	·단위부서	

사 천 시 공 보

제 363호 (5)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초과 10톤 이하)	·단위부서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하)	·단위부서	
	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	·단위부서	
특수용	청소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
	구급차	·단위부서	
	분뇨차	·단위부서	
	진료차	·단위부서	
	이동수리차	·단위부서	
	트럭트렉타	·단위부서	
	트레일러	·단위부서	
	렉카차	·단위부서	
	그 밖의 특수차	·단위부서	

※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363호(6)

사천시 규칙 제56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3호(7)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신청서		민원서류	
		접수번호:	접수일시:
아래와 같이 급수공사를 받고자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 급수설비일체를 사천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4조에 규정된 관리상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처리기한:	처리과 기록물등록번호
공사 내용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개조 ○계량기 구경확대 ○계량기 구경축소 ○위치 변경 ○기타()		
공사 위치	<input type="checkbox"/> 도로명주소 : 사천시 읍면동 로,길 동 호() <input type="checkbox"/> 지번주소 : 사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		
신청 내용	건물용도		건물연면적 m ²
	건물주		계량기구경 D= mm
	건물허가번호		허가일시
신청인	성명		<u>생년월일</u>
	신청인과 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세입자 <input type="checkbox"/> 친척 <input type="checkbox"/> 기타()	
	우편물도착주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p>			
<h2>사 용 승 낙 서</h2>			
<p>위 신청인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내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토지 및 건물소재지 :</p> <p>○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u>생년월일</u> :</p> <p>○주소 :</p>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363호(8)

【별지 제4호서식】

급수설비소유자(사용자)명의변경 신청서(제8조관련)

사천시장 귀하

아래 전용수도에 대하여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명의변경 하고자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 도 전 소 재 지	새주소: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급수종류	급수종별
종전명의자	관리번호
신규명의자	생년월일
변경사유	

년 월 일

○신고인(신규명의자)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전화 및 핸드폰) :

수 도 전 대장정리	검침부 정 리	수납(체납) 부 정리	결 재			명 의 변 경
			담당자	담당주사	소 장	

사 천 시 공 보

제363호(9)

【별지 제5호서식】

급수업종변경신고서(제8조관련)

사천시장 귀하

아래와 같이 수도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수도전 소재지	새주소 : 사천시 읍·면·동 로 번지 (주소 : 읍·면·동 리 번지)		
수도전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		
종전급수업종			
변경코자 하는 급수업종			
변경사유의 급수실태			

년 월 일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읍·면·동 리 번지)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전화 및 핸드폰) :

급수실태 조사자의 견	수도전 대장정리	조정부 리	수납 (체납) 부정리	검침 카드 정리	결재			비고
					담당 자	담당 주사	소장	
								업종 변경 코자함

사 천 시 공 보

제363호(10)

【별지 제6호서식】

개 전 중 지 전 폐 전 급수설비의 신고서 (제8조관련)

사천시장 귀하

아래 수도전에 대하여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에 따라 (개선·중지·폐전)하고자 신고합니다.

수전소재지	새주소: 읍·면·동 로 번지(주소: 읍·면·동 리 번지)					
수용가성명		관리번호		업종		구경
사 유						

년 월 일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 읍·면·동 리 번지)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전화 및 핸드폰) :

수 도 전 대장정리	검침부 정 리	수납(체납 부 정리	결 채			조치코자 함 년 월 일
			담당자	담당주사	소 장	

사 천 시 공 보

제 363호 (11)

【별지 제7호서식】

										도면번호				
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														
설 계 결 재			급수전 위 치							수전번호				
			청구자							계량기		mm		
			급수전 성 명				전화번호				공사개요			
			생년월일				도 급 회사명							
			계 약 년월일		년 월 일		준공예정 년 월 일				정산년월일			
		착 공 년월일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정산 내용				
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명 칭	규격	수량	단위	합계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비고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순공사비 계														
				관급 자재비			수수료							
					소계				소계					
							시설분담금							
				급수공사비				총 계						
				도급공사비										

사 천 시 공 보

제363호(13)

[이면]

자동계좌이체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 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 라 한다)와 (사천시 수도사업소) 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영업일)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3조(출금)

①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사천시수도사업소)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납부됩니다.

②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될 수 있습니다.

제4조(과실 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사천시수도사업소)이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5조(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출금처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제6조(출금 우선 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사천시 수도사업소)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사천시 수도사업소)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자동이체 신청)

(사천시수도사업소)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2. (사천시수도사업소)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9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시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10조(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사천시수도사업소)이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제11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은행에 제공됩니다.

제12조(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자동이체 등록 계좌가 2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363호(14)

가정용 가구분할적용신고서(신규·변경)(제8조관련)

관 리 번 호 :

수전 소재지(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읍·면·동 리 번지)

수용가 성명 :

연 락 처(전화 및 핸드폰):

위 본인은 1주택에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신고 하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적용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상수도 납부고지서 영수증 사본 1매.

사천시장 귀하

가구분할적용신고접수증

읍면동접수번호 :

적용시기 : 월 납기부터 적용

시 접 수 번 호 :

소 유 자 성 명 :

신청 가구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공 보

제363호(17)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4 - 14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4. 10. 15.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허가번호 : 제2014 - 8호
2. 점용·사용허가년월일 : 2014년 10월 13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송포미래창조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지반조사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송포동 1538-2 번지선(노룡동 일원) 공유수면
5. 점용·사용의 면적 : 1,872㎡(직접 : 1,872㎡, 간접 -㎡)
 - 해상빠지, 오탁방지망(144×13=1,872)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4년 10월 13일~2014년 11월 12일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명 : 윤상묵
 - 나.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관양동 메가빌라 107호)
8. 점용·사용의 허가조건 : 붙임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363호(18)

허 가 조 건

1. 본 건은 송포미래창조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지반조사를 위한 건입니다.
2. 동 시설물 운용 시, 시설물 및 주변해역에 각종 쓰레기(폐기물) 등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동 공사 시 주변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사 방법 채택 및 오탁방지막 운용 등 구체적인 해양오염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4. 인근을 지나는 어선 등의 항행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5. 동 사업과 관련하여 어업 권리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근 해역의 어업권과 수산자원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어민 등의 의견(민원 제기)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점용·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우리 시(문화관광과)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7. 허가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및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하고 의법 조치 합니다.
8. 위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조정신청 할 수 있으며, 만약 동 기한 내 이의 신청치 않을 시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